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. 16.>

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(제12조 관련)

1. 교통수단

이동편의시설 / 대상시설		안내시설			내부시설				그 밖의 시설		
		안내방송	전자문자안내판	목적지 표시	휠체어 승강설비	휠체어 보관함	교통약자용 좌석	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	손잡이	장애인 접근가능 표시	출입구 통로
가. 버스	1) 시내버스(저상형)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2) 시내버스(일반형)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3) 시내버스(좌석형)	○	○	○	○		○			○	
	4) 농어촌버스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5) 마을버스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6) 시외버스	○	○	○	○		○			○	
나. 도시철도차량		○	○	○			○		○	○	○
다. 철도차량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
라. 궤도차량		○	○	○			○		○	○	○
마. 항공기		○	○	○		○	○	○		○	○
바. 선박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
사. 광역철도		○	○	○			○		○	○	○

비고

위 표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목적지가 하나이고,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·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: 안내방송
2. 목적지가 하나이고,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: 전자문자안내판
3. 목적지가 하나인 경우: 목적지 표시
4.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: 교통약자용 좌석

2. 여객시설

이동편의시설 / 대상시설	매개시설			내부시설					위생시설		
	보행접근로	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	장애인 전용주차구역	통로	경사로	승강기	에스컬레이터	계단	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		
									대변기	소변기	세면대
가. 여객자동차터미널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나. 버스정류장											
다. 도시철도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라. 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마. 궤도 정거장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○	○

바. 환승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사. 공항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아. 항만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자. 광역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이동편의시설 / 대상시설	안내시설			그 밖의 시설								
	점자블록	유도 및 안내시설	경보 및 피난시설	매표소	판매기	음료대	개찰구	승강장	보안검사장	여객탑승교	대기시설	임산부 휴게시설
가. 여객자동차 터미널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			○
나. 버스정류장	○	○									○	
다. 도시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라. 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마. 궤도 정거장	○	○	○	○		○		○				○
바. 환승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	○
사. 공항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		○	○		○
아. 항만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					○
자. 광역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
3. 도로

이동편의시설 / 대상시설	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	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	장애인전용 주차구역	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	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
가. 도로	○	○	○	○	○
나. 준용도로	○	○	○	○	○